



1. 법률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나. 전자금융거래법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5/28 개정 · 시행, 단 일부 8/29 시행)

1) 개정목적

-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 ☐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8조 8항)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77조의2~3)
 -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 해당 내용은 개정된 법제처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나)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6조 3항, 6항, 7항, 9항)
 -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전담중개업무’란 법 249조의2 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
 -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그 밖에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87조)

-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함)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및 신설

□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8조의2)

-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의미
-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의미
-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의미
 - 거래소시장은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
 -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
 - 파생상품시장은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의미
 -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거래소의 허가제 도입(373조의2)

-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함
 -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
 -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함)이 되는 자의 범위
- 위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9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 것
 -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정관,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신설(78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 준수의무 부담
 -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에 관한 사항
 -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차감 및 결제방법·결제책임 등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공시에 관한 사항
 -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72조(신용공여), 73조(매매명세의 통지) 및 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배제
-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음
 -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제보나 보도
 -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정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음
 - 377조 1항 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
 -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 383조(정보이용금지 등) 1항~2항, 408조(영업양도등의 승인) 및 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373조)

- 누구든지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안 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가능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 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9조 26항)

- ‘신용평가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금융투자상품



- 기업·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기존 제도의 미비점 보완 신설

☐ 임원의 자격(24조 2항~3항)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함
 -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250조 7항 1호)

- 은행이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포함)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을 두어야 함
- 임직원에게 다음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251조 3항 1호)

-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포함)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을 두어야 함
- 임직원에게 다음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마) 불공정거래 · 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

□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119조 2항, 5항~7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정정신고서(122조 3항, 6항)

-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125조)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짐
 - 단,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증권발행과 모집·매출에 관련한 위원회의 조치(132조)

-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음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또는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
 -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
 -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또한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에 위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조 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¹⁾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상장에 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됨

1)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을 포함



-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2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2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1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의미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176조 4항)

-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124조 등)

-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 됨
 -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바)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152조의2)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



-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 발행인은 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65조의10)

- 주권상장법인이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에 한함)와 「상법」에 따른 사채(주권 관련 사채권)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항(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를 준용
-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음

□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153조)

- 의결권권유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65조의6)

-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따름
 -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첫 번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위 세 번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함
 -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165조의11)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
-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상법」에 따른 사채²⁾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위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314조 4항~6항, 단, 2015/1/1 시행)

- 신종사채의 발행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2)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



-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159조 2항 3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함),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443조, 447조, 단 2013/11/29 시행)

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013/5/22 개정 · 11/23 시행)

1) 개정목적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 · 평가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 · 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2) 개정내용

-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3조 3항)
 -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대상회사를 금융업권 단위가 아닌 금융회사 규모 및 전자금융거래의 빈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9조 1항)

- 해킹(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21조 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화(21조의3)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완조치 및 그 이행실태 점검 및 보완조치 미행 시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

□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21조의4~6)

-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인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 마련(33조의2, 45조의2)

-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인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40조 4항~6항)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연구원 이현정 (02-3771-0685, anet2@kcmi.re.kr)